

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
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주류판매기준 완화(안 제7조)

- 1) 지하공공보도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
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

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3. 「주세법」에 의한 주류판매업을 「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」에
의한 주류판매업으로 개정하고, 제외항목에 의제소매업자를 추가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) ① (생략)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~ 2. (생략) 3. 「주세법」에 의한 주류판매업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. 4. ~ 7. (생략) ③. ~ ④ (생략)	제7조(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류판매업. 다만, 의제조매업자 및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. ~ ④ (현행과 같음)